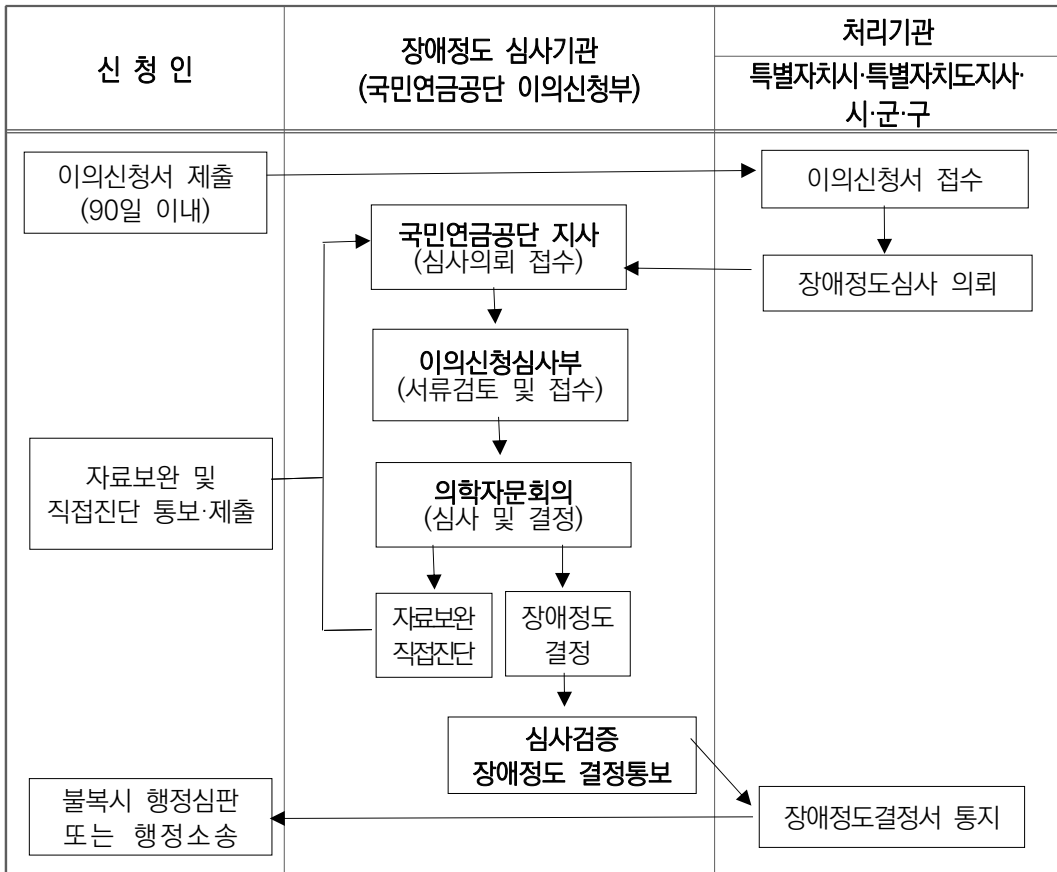


〈서식 25〉 이의신청서(뒷면)

처 리 절 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

- 이의신청 심사기관** : 국민연금공단 내의 이의신청심사 전담부서에서 심사합니다.
- 심사방법** : 별도부서에서 원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전문의사로 구성된 의학자문회의를 개최해 심사함으로써 이의신청에 따른 장애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고 있습니다.
- 장애정도심사위원회** : 장애정도 판정기준의 문리적 해석만으로 장애정도를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고 개인의 신체적·정신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해야 되는 것은 별도로 장애정도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층심사하며,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심사대상자를 장애정도심사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하여 대면심사를 진행합니다.
- 이의신청에 대한 불복** : 이의신청은 한 번만 가능하며,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심사결과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]